

計量 및 测定에 관한 法律 改正 法律 案

計量 및 测定에 관한 法律 을 다음과 같이 改正 한다.

計量에 관한 法律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 法 은 計量의 기준을 정하여 적정한 計量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公正한 商去來 秩序의 유지 및 產業의 先進化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計量”이라 함은 去來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길이 · 質量 · 時間 · 溫度 · 光度 · 電流 · 物質量 · 넓이 · 부피 · 力量 · 壓力 · 일 · 热量 · 流量 · 粘度 · 電力量 · 電氣抵抗 · 照度 · 驟音 · 壓縮强度 등 物象狀態의 量을 결정하기 위한 操作을 말한다.
2. “計量器”라 함은 計量을 하기 위한 機械 · 器具 또는 裝置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法定計量”이라 함은 計量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法令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計量을 말한다.

第3條(計量單位) ①計量의 기준이 되는 單位(이하 “法定計量單位”라
한다)는 基本單位 · 誘導單位 · 補助單位 및 特殊單位로 구분한다.

②基本單位는 国家표준기본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다.

③誘導單位는 基本單位의 조합 또는 基本單位 및 다른 誘導單位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單位로서 그 單位 및 定義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補助單位는 基本單位 및 誘導單位를 십진배수나 분수로 표기하는
것으로 그 單位 및 定義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特殊單位는 특수한 計量의 용도에 쓰이는 單位로서 그 單位 및 定義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非法定計量單位의 사용금지 등) ①누구든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法定計量單位외의 單位(이하 “非法定計量單位”라
한다)를 計量 또는 廣告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非法定計量單位로 표시된 計量器나
는 아니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計量器나 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章 計量器에 관한 사업 및 檢定 등

第5條(計量器의 製作業 등의 登錄) ①計量器의 製作 또는 修理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 및 計量證明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產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別市長 · 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 · 道知事”라 한다)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要件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計量器의 型式認證) ①計量器를 製作 또는 輸入하는 者는 그 計量器의 型式에 관하여 產業資源部長官으로부터 認證을 받을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認證의 대상 ·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產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第7條(精密度등의 표시)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計量器 製作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製作業者”라 한다), 計量器 修理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修理業者”라 한다) 또는 計量器의 輸入을 業으로 하는 者(이하 “輸入業者”라 한다)는 製作 · 修理 또는 輸入한 計量器에 精密度 기타 產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이하 “精密度等”이라 한다)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第8條(讓渡 등의 제한) 製作業者, 修理業者 또는 輸入業者와 計量器의 販賣를 業으로 하는 者(이하 “販賣業者”라 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計量器를 讓渡 또는 貸與하거나 謂度 또는 貸與를 위하여 陳列·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1. 非法定計量單位가 표시되어 있는 것. 다만, 第4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非法定計量單位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2. 計量器의 製作業者가 아닌 者가 製作한 것
3. 精密度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것
4.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定의 有效期間이 경과된 것
5.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檢定證印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定期 檢查證印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이를 표시한 것

第9條(사용의 제한) 計量器가 아닌 것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計量器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法定計量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目的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第8條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貸與·陳列·보관 등이 제한되는 것
2.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定을 받지 아니하거나 檢定에 합格하지 아니한 것
3. 變造된 것
4. 大統領令이 정하는 使用公差를 초과하는 것

第10條(정확히 計量하여야 할 義務) ①法定計量을 하는 者는 정확히 計量하여야 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商品別 許容誤差를 초과하여 計量하여서는 아니된다.

②法定計量에 필요한 計量器의 사용방법 등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第11條(實量 또는 含量의 표시) ①法定計量單位에 의한 길이 · 質量 · 부피(이하 “實量”이라 한다) 또는 濃度 · 密度 · 粘度(이하 “含量”이라 한다)로 표시된 商品중 大統領令이 정한 商品을 製造 · 輸入 · 加工 또는 販賣하는 者가 그 商品을 容器에 넣거나 포장하는 경우로써 그 容器 · 포장 또는 봉지를 파기하지 아니하고는 實量 또는 含量을 增減할 수 없게 한 때에는 容器 · 포장 또는 봉지에 實量 또는 含量을 표시하고 商號 또는 姓名을 附記하여야 한다.

②實量 또는 含量을 표시하기 위하여 計量을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許容誤差를 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計量하여야 한다.

第12條(檢定) ①製作業者, 修理業者 또는 輸入業者는 그 製作 · 修理 또는 輸入한 計量器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産業資源部長官의 檢定을 받아야 한다. 다만,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計量器에 대하여는 檢定의 전부 또는 일부를 免除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定을 받아야 할 計量器의 檢定基準은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定의 有效期間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有效期間이 만료될 計量器를 法定計量에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有效期間 만료전에 당해 計量器에 대하여 檢定을 받아야 한다.

第13條(檢定을 행하는 機關의 지정 등)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2條의 규정에 의한 檢定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計量器의 檢定을 행하는 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者는 檢定要員·檢定設備 등을 확보하여 産業資源部長官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定을 행하는 機關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製作業者 중 品質경영상태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製作業體에 대하여는 이를 自體 檢定을 행할 수 있는 製作業者(이하“自體檢定事業者”라 한다)로 지정하여 計量器의 製作에 대한 檢定을 하게 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의 기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第14條(檢定證印) ①産業資源部長官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檢定을 행하는 機關으로 지정받은 者 및 自體檢定事業者로 지정받은 者는 그가 행한 檢定에 합격한 計量器에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檢定證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第12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檢定의 전부를 免除받은 計量

器에 대하여도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檢定證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第15條(計量器의 自體修理) ①市·道知事은 第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計量器를 사용하는 者에 대하여 計量器를 자체적으로 修理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修理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章 사후관리

第16條(検査) ①市·道知事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量器를 檢查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查는 2年마다 1회 실시하는 定期検査와 수시로 실시하는 隨時検査로 구분한다.

③市·道知事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検査를 免除할 수 있다.

第17條(定期検査의 證印) ①市·道知事은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検査에 합격한 計量器에 定期検査證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市·道知事은 定期検査에 不合格한 計量器에 대하여는 檢定證印

또는 定期検査證印의 표시를 제거하거나 消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定期検査의 절차 · 檢査基準 · 定期検査 證印의 표시 기타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第18條(보고 및 隨時検査 등) ①市 · 道知事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製作業者, 修理業者, 輸入業者, 販賣業者 및 法定計量을 행하는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事業者の 事業場 · 점포 · 營業所 · 事務所 · 공장 또는 倉庫 기타 필요한 장소에 出入하여 計量器 · 帳簿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规定에 의하여 출입 · 檢査 또는 질문을 하는 公務員(이하 “計量検査公務員”이라 한다)은 現場에서 檢査하기 어려운 計量器 또는 商品(實量이나 含量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 場所에 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計量検査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第17條第3項의 规定은 第1項 내지 第3項의 보고 및 隨時検査 등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19條(개선명령) 市·道知事는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檢查 결과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計量器에 대하여는 3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計量器 또는 그 표시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認證을 받은 計量器로서 그 型式認證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
2. 精密度등의 표시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한 것

第20條(司法警察權) 計量検査公務員은 이 法에 規定된 犯罪에 관하여는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 行할者와 그職務範圍에 關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한다.

第21條(不正計量器의 처리) ①計量検査公務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計量器에 대하여는 그 證印의 표시를 제거하거나 消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1.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한 者가 製作 또는 修理한 것
 2. 第9條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 또는 소지가 제한되는 것
- ②計量検査公務員은 第7條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 精密度等, 實量 또는 含量의 표시를 명하거나 그 표시의 정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③計量検査公務員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하는 때

에는 당해 計量器 또는 商品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그 처분의 이유를 告知하여야 한다.

第22條(登錄의 取消 또는 사업의 정지) 市·道知事는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1年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偽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者
2.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要件에 미달하게 된 者
3. 第8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4.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者

第4章 補則

第23條(計量事業의 지원) 產業資源部長官은 計量產業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號의 사업을 영위하는 機關 또는 團體에 대하여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計量產業의 발전을 위한 精密測定技術의 보급사업
2. 計量產業 專門技術人力의 양성사업
3. 實量 또는 含量標示商品에 대한 調查事業
4. 기타 產業資源部長官이 計量制度의 발전과 거래질서 확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第24條(韓國計量測定協會) ①製作業者 및 국가표준기본법 第1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較正業務專擔機關으로 지정받은 者는 產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韓國計量測定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協會는 다음 各號의 事業을 수행한다.

1. 計量產業發展 및 測定의 精密度 향상을 위한 指導 · 調查 및 弘報 등에 관한 事業
2. 計量 · 測定產業의 專門技術人力의 양성 事業
3. 計量器 · 測定器의 技術基準 및 團體規格 開發 · 보급에 관한 事業
4. 計量器 · 測定器의 認證 및 認定에 관한 事業
5. 計量 · 測定關聯 國際機構 및 外國 관련단체와의 협력증진에 관한 事業
6. 기타 產業資源部長官의 委託 또는 指定하는 事業

③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④協會의 設立 · 운영 및 監督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5條(聽聞) 市 · 道知事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6條(手數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產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1.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
2.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型式認證을 받고자 하는 者
3.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檢定을 받고자 하는 者
4.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중 다음 各目的
者
 - 가. 計量證明業의 登錄을 한 者
 - 나. 5톤이상의 대형전기식 지시저울의 소재지에서 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

第27條(權限의 위임 · 委託) ①産業資源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 · 道知事, 産業資源部 또는 中小企業廳의 所屬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 · 道知事는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政府出捐研究機關등의 設立 · 운영 및 육성에 관한法律에 의하여 설립된 政府出捐研究機關, 관련업무를 행하는 機關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 · 道知事로부터 委託받은 業務에 종사하는 研究機關 또는 機關 · 團體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5章 罰則

第28條(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併科할 수 있다.

1. 第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計量器의 製作 또는 修理를 業으로 한 者
2. 第8條第2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計量器의 製作業者가 아닌者가 製作한 計量器를 讓渡 또는 貸與한 者
3.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定을 받지 아니한 者
4. 計量器를 變造하거나 이를 让渡 또는 貸與한 者

第29條(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7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併科할 수 있다.

1. 第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精密度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者
2. 第8條第3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精密度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計量器를 让渡 또는 貸與한 者
3. 第8條第4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定有效期間이 경과된 計量器를 让渡 또는 貸與한 者
4. 第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計量器가 아닌 것 또는 同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計量器를 法定計量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

지한 者(第28條第3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計量을 欺罔할 目的으로 計量器를 사용한 者

第30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併科할 수 있다.

1.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非法定計量單位로 표시된 計量器나 商品을 製作 또는 輸入한 製作業者 또는 輸入業者
2. 第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計量證明을 業으로 한 者
3. 第8條第5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定證印 또는 定期檢查證印의 표시가 없는 計量器를 讓渡 또는 貸與한 者
4.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商品을 容器 · 포장 또는 봉지에 넣거나 포장하여 販賣하면서 實量 또는 含量에 관하여 그 許容誤差를 초과하여 計量된 商品을 販賣한 者
5.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第31條(未遂犯) 第28條第3號 · 第4號, 第29條第2號 · 第3號, 第30條第3號 · 第4號에 規定된 罪의 未遂犯은 이를 處罰한다.

第32條(兩罰規定) 法人の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 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8條 내지 第

3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33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8條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非法定計量單位로 표시된 計量器를 讓渡 또는 貸與한 者

2.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商品의 容器·포장 또는 봉지에 實量 또는 含量의 표시나 商號 또는 姓名의 附記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자료제출 또는 隨時検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非法定計量單位를 計量 또는 廣告에 사용한 者

2.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변경된 登錄事項을 申告하지 아니한 者

3.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容誤差를 초과하여 計量한 者

4. 第12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定有效期間이 만료된 計量器의 檢定을 받지 아니한 者

5.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計量器의 定期検査를 받지 아니한 者

6.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計量器 또는 商品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者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產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が 賦課·徵收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產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產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자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법은 2000年 7月 1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製作業·修理業 및 計量證明業의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製作業 또는 修理業의 登錄을 한
者 및 計量證明業의 登錄을 한 者는 第5條의 改正 規定에 의하여
각각 登錄한 것으로 본다.

第3條(計量器의 型式認證 · 定期検査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
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承認을 받은 計量器는 第6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型式認證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產業資源部長官의 檢查를
받은 計量器는 第16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市 · 道知事의 檢查를 받
은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檢定이나 有效期間 만료
전의 檢定을 받은 計量器는 第12條第1項 및 第4項의 改正規定에 의
한 市 · 道知事의 檢定이나 有效期間 만료전의 檢定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4條(計量器의 自體修理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
定에 의하여 計量의 自治管理를 한 者는 第15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計量器의 自體修理를 할 수 있는 者로 본다.

第5條(韓國測定機器較正協會의 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產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設立된 韓國測定機器較正協會는 第24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立
된 韓國計量測定協會로 본다.

②이 法 施行 당시의 韓國測定機器較正協會가 행한 행위 기타의 法律關係에 있어서 韓國測定機器較正協會는 이를 韓國計量測定協會로 본다.

③韓國測定機器較正協會는 施行日로 부터 3月이내에 第24條의 改正規定에 적합하게 定款을 변경하고 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變更登記를 하여야 한다.

第6條(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국가표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제17조제2항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을 “계량에관한법률”로 한다.

②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6項第8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計量에관한法律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計量器의 製作業・修理業 등의 登錄

③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7號 및 第6條第12號중 “計量및測定에관한法律”을 각각 “計量에관한法律”로 한다.

④外國人投資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1 第11號아目중 “計量및測定에관한法律 第24條”를 “計量에관한法律 第5條”로 한다.